

II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주체

국민은 주체가 되나 법인과 외국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주체가 될 수 있다.

III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요건과 내용

1. 요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 (범죄피해보호법 제3조)

- 1) 장소 : 대한민국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 뉴욕에서 한국인 간에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피해
 - ① 범죄피해자 :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피해를 입은 자에게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 인정된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신체에 대한 피해자의 경우 ‘중장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신체에 대한 피해가 아닌 재산이나 인격에 대한 피해를 받은 자는 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 제27조 제5항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는 모든 범죄피해를 받은 자이므로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보다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의 범위가 넓다.
 - ② 범죄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자), 제22조 제1항(긴급피난)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제20조(정당행위)와 제21조(정당방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3)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법 제16조)
- 4) 생계유지곤란 유무 요건폐지 : 구법에서는 피해자의 생계유지곤란을 구조청구권의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은 동 규정을 삭제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장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외국인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체가 된다.(×) 외국인은 상호보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 대한민국의 선박 내에서 미국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중장해를 당한 자는 구조청구권이 있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재산상의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당방위·과실로 인한 피해는 구조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2.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구조금 지급신청

구조금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25조)

4. 구조금 지급

- 1) 유족구조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2) 장해구조금 : 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5. 구조청구권의 성질

- 1) 보충성 :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나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 2) 구조청구권 소멸시효 (제31조) : 구조결정이 당해신청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3) 구조금 수령권의 양도·압류·담보제공금지 (제32조)

■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조금지급신청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검찰청산하의 범죄피해자 구조심의회에 한다.(×)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식으로 출제되기도 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금액의 범위 안에서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구조금의 보충성 ※ 유사문제 : 이 권리는 국가의 과실 책임이 아니므로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을 받는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한다.(×)

■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전액 양도나 압류가 금지된다. 형사보상청구권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도 양도나 압류가 금지된다.